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 구축·운영〉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2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 구축·운영(안 제8조의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온라인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5등의 5,000원 당첨금이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처럼 큰 액수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복권 당첨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하여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 구축·운영(안 제8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현금카드로 복권을 구매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 계좌에 자동으로 지급하여야 함	
		○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5만원 초과 당첨금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당첨 결과를 알려야 함	
		○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개정안은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금카드를 통하여 온라인복권인 로또6/45복권(이하 ‘로또’라고 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을 구매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지급 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당첨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법상 복권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2조1) 각 목에 따른 인쇄복권(추첨식·즉석식), 전자복권(추첨식·즉석식),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온라인복권(로또), 혼합형복권(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복권법」 제9조²⁾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됨. 2011년 「복권법」 개정 전에는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180일이었으나, 복권 당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을 개정하여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음.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수령 복권당첨금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첫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구매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미지급 당첨금이 매년 약 500억~600억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최근 미지급(미수령) 복권당첨금 현황을 보면, 2023년 627억원 등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연간 약 500억~600억원의 미지급 당첨금이 발생하고, 미지급 건수는 로또의 경우 연간 약 600여만건, 결합복권(연금복권)의 경우 연간 약 150여만건에 달함.

[2020년~2024년 미지급(미수령) 복권 당첨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금액	59,231	51,574	49,245	62,710	52,485
	건수	7,634,752	7,568,282	7,624,937	7,733,060	7,779,135
온라인복권 (로또)	금액	49,299	42,985	41,315	52,132	42,600
	건수	6,265,916	5,906,663	6,049,042	6,281,139	6,259,556
연금복권	금액	7,363	4,219	4,385	3,941	3,671
	건수	1,368,828	1,661,610	1,575,883	1,451,916	1,519,579
인쇄복권*	금액	2,566	4,369	3,543	6,636	6,214
	건수	-	-	-	-	-
전자복권	금액	2	1	2	1	-
	건수	8	9	12	5	-

* 시효완성된 미수령 건과 겹치 않았으나 당첨 번호가 내재되어 있는 건이 구분되지 않는
인쇄복권 특성상 건수는 집계 불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특히, 로또의 경우 복권판매액 중 비중이 가장 큰 만큼(2024년 기준 복권판매액 전체의 81.2%) 미수령 당첨금 중 로또의 비중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미수령 당첨금 중 5등(5,000원) 당첨금의 규모가 2024년 기준 71.9%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20년~2024년 로또 등수별 미수령 복권 당첨금(시효완성) 현황]

연도	1등	2등	3등	4등 (50,000원)	5등 (5,000원)	합계
2020년	8,511 백만원 / 3건	1,896 백만원 / 32건	2,061백만원 / 1,388건	6,121백만원 / 122,414건	30,710백만원 / 6,142,079건	49,299백만원 / 6,265,916건
2021년	4,332백만원 / 2건	1,880백만원 / 35건	2,000백만원 / 1,392건	5,829백만원 / 116,576건	28,943백만원 / 5,788,658건	42,984백만원 / 5,906,663건
2022년	2,379백만원 / 1건	1,241백만원 / 23건	2,027백만원 / 1,412건	6,033백만원 / 120,662건	29,635백만원 / 5,926,944건	41,315백만원 / 6,049,042건
2023년	11,544백만원 / 4건	1,370백만원 / 25건	2,065백만원 / 1,434건	6,395백만원 / 127,900건	30,759백만원 / 6,151,776건	52,133백만원 / 6,281,139건
2024년	1,535백만원 / 1건	1,705백만원 / 31건	2,137백만원 / 1,476건	6,591백만원 / 131,822건	30,631백만원 / 6,126,226건	42,600백만원 / 6,259,556건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당첨금이 당초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인 점을 감안하면 복권 구매자가 당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못한 미지급 당첨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5만원 이하의 소액당첨금에 대하여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며,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당첨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의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어 보임.

둘째, 현금 결제 및 보유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복권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수단 확대가 필요함.

현재 복권을 구매할 경우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하여 복권 구매가 가능하지만,

복권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현금(당첨복권, 실시간 계좌이체 포함)³⁾으로만 가능함.

[복권종류별 구매방법]

복권종류		상품명	구매장소	구매수단
온라인복권		로또6/45	· 로또 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점 · 수탁사업자(동행복권) 인터넷 홈페이지(<u>모바일 불가</u>)	· 현금(당첨복권, 계좌이체 포함) · 홈페이지 내 예치금 (계좌이체로 충전)
결합복권		연금복권720+	· 복권방슈퍼 등 복권 판매점 · 수탁사업자(동행복권) 인터넷 홈페이지(<u>모바일 가능</u>)	· 현금(당첨복권, 계좌이체 포함) · 홈페이지 내 예치금 (계좌이체로 충전)
인쇄복권(즉석식)		스피또2000	· 복권방슈퍼 등 복권 판매점	· 현금(당첨복권, 계좌이체 포함)
		스피또2000		
		스피또500		
전자복권 (인터넷복권)	추첨식	스피드키노	· 수탁사업자(동행복권) 인터넷 홈페이지(<u>모바일 가능</u>)	· 홈페이지 내 예치금 (계좌이체로 충전)
		메가빙고		
		파워볼		
	즉석식	트리플럭		
		트레저헌터		
		더블잭		
		마이더스		
		캐치미		

자료: 복권위원회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그러나,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확대 등 거래관행의 변화로 최근 현금

3)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 ① 복권의 판매는 현금(당첨복권, 실시간 계좌이체를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한국은행이 2022년 6월 발표한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구당 월 평균 현금지출액은 51만원으로 2018년(64만원)에 비해 13만원(△25.4%)이나 감소하였으며,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2018년 32.1% 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따라서 현금 이외에 현금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를 허용함으로써 복권 구매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복권판매점 입장에서 현금의 경우 판매대금 보관 등 처리 과정의 불편과 분실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복권법」상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복권 구매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⁴⁾⁵⁾ 이는 개인의 직접 지불여력 내에서만 복권 등 사행행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공여를 통하여 지불여력을 초과하는 사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임.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체크카드의 경우 복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사행행위 결제금지는 신용공여가 가능한 체크카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주요 결제수단 비교(오프라인 결제 기준)]

구 분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제공주체	은행	카드사	
근거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공여 가능여부	X	O	
수수료*	1%	1.25%	1.5%
가맹계약 구조	한 은행과의 계약 효력이 전은행에 발생	카드사별 개별 계약	
자금정산주기	익영업일	약 2~3영업일	

*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 기준

자료 : 금융결제원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반면, 가맹점이 은행·금융결제원과 연결되어 은행이 가맹점에게 즉시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인 ‘현금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정 및 취지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당첨금을 전자자금이체로 당첨금을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카드 결제 - 복권번호 선택 - 당첨금 지급”행위를 통합하여 연계하는 새로운 시스템(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 이후에도 시스템의 신뢰성·보안성·안정성이 중요한 복

권 사업의 특성상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⁶⁾⁷⁾

둘째,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정안 제8조의2제1항과 같이 소액 당첨금을 전자자금이체로 자동 지급하는 경우, 운영 과정에서 구매자의 복권번호선택 내역 및 복권당첨여부 등을 법적 권한이 없는 현금카드 발급은행 등이 보유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복권당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사업자가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 및 정보제공을 금지한 「복권법」 제10조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8조의2제2항과 같이 5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 구매자의 요청(동의)을 받으므로 「복권법」 제10조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안내할 복권위원회에서 복권당첨자의 성명, 계좌번호 및 휴대폰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6) 기획재정부도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의 개발비용이 발생하며, 현금카드 결제수단 도입 시 판매점주에게 결제수수료·통신료·별도 현금카드 단말기 구입비용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복권 수탁사업자(동행복권)에게도 당첨금 지급을 위한 은행 이체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현금카드의 낮은 보급률(카드시장의 0.1%)을 고려하면 현금카드를 활용한 결제방식의 활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결제수수료: 거래금액의 1% 수준(금융결제원 현금IC카드 가맹점 거래 수수료)으로, 연간 약 579억원 예상(‘24년 오프라인 로또 판매금액 5.79조원 기준)

※ 은행 이체수수료: 시중은행 펌뱅크 타행 입금 수수료(건당 200원) 가정 시, 연간 약 275억원 예상(‘24년 로또 4/5등 당첨 건 중 인터넷 지급분 제외 1.37억건 기준)

7) 또한, 기획재정부는 복권 판매액 중 미수령 당첨금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동행복권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 판매점 현수막 등을 통하여 미수령당첨금 현황을 제공하는 등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현행 제도하에서도 구매자가 수탁사업자(동행복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하여 예치금으로 구입한 복권⁹⁾은 소액 당첨의 경우 당첨금이 구매자의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되고 있음.

또한, 현행 「복권법」에서는 복권의 미성년자 판매(지급) 제한¹⁰⁾, 소지복권의 훼손·진위 여부 확인¹¹⁾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을 통한 자동 지급보다는 직접 방문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해 보임.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포함되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공익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음.

9)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분, 연금복권 인터넷·모바일 판매분, 전자복권 인터넷·모바일 판매분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당첨금 등)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의2(소액 당첨금의 지급 방법 등) ① 복권위원회는 현금카드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온라인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을 구매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 계좌에 자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종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해당 복권의 최종 구매자에게 당첨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제 및 당첨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이하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및 당첨금 지급의 기한과 제3항에 따른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53

